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74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협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 기관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의 업무절차(처리기간, 접수근거, 서류 및 현장심사), 부적합 통보 등 제재사항 규정
- 나.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의 사후관리, 부적합 통보 등 제재 사항 규정
- 다.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취소에 대한 협회 처리 사항 규정
- 라.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시 협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정부입법지원센터

- 1) 전자우편(이메일) : lms5561@korea.k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6년 0월 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I.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별표 제5호 나목 6)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 등에 대해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치·가동 확인”이란 협회 회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기술적용시설이 설치·가동 중임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서류심사”란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술의 권리관계 및 유효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 “현장심사”란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여부 확인과 해당 기술적용에 따른 최종 생산물의 품질확인평가를 말한다.

라.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받은 검증기술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분야 신기술 개발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받은 기술을 의미하며,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으로 평가한다.(사용협약자의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의 80%를 적용한다)

마. “현장평가확인서”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급한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가. 이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이 지침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환경·건설관련 신기술 및 특허기술이 신청인의 시설 내 적용되어 설치·가동 여부 확인(이하 “설치·가동 확인”이라 한다)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II.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절차

1. 처리기간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으며,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서류보완,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현장심사 시 요구사항 보완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2. 접 수

협회 회장은 중간처리업체가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서류심사

가. 협회 회장은 중간처리업체가 제출한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해 다음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의 권리관계 및 유효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서류심사 결과 제출서류 등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협회 회장은 신청업체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환경·건설 분야 신기술 인·검증 기술을 보유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검증기술의 개발자 또는 인·검증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자
-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로써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분야 신기술 개발자 또는 지정 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자

구 분	확 인 사 항
기술권리관계 및 유효여부	■ 환경·건설 분야 신기술 인·검증 기술 - 개발자 : 1. 인·검증서 및 지정서 상의 개발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인·검증기간 및 지정기간의 유효여부 3. 당해 기술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검증기술 여부 ※ 검증·지정 당시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개발자는 현장평가확인서 제출 - 협약자 : 1. 사용협약서 등 기술사용권에 대한 자료의 제출여부 2. 당해 기술의 인·검증, 지정 및 협약기간 유효여부 3. 현장평가확인서 제출여부 ■ 환경신기술 인증 - 개발자 : 1. 인증서 상의 개발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인증기간 유효여부 - 협약자 : 1. 사용협약서 등 기술사용권에 대한 자료의 제출여부 2. 당해 기술의 인증 및 협약기간 유효여부 ■ 특허기술 - 등록권자 : 1. 특허등록원부 상의 등록권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특허기간 유효여부 - 전용실시권자 : 1. 특허등록원부 상의 전용실시권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특허기간 유효여부

4. 현장심사

가. 협회 회장 서류심사 결과 기술의 권리관계 및 유효여부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심사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업체에게 심사일정,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통보한다.

- 나. 현장심사에서는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여부 확인과 순환골재 등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 다.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폐기물 투입부터 최종 생산물의 배출까지 최소 30분 이상의 처리공정을 가동해야 하며, 특허 및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이 정상적으로 설치·가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라. 해당 기술적용시설이 중간처리업체의 처리공정에 설치·가동되어 순환골재 등의 품질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생산물을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공인시험기관에 모두 의뢰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건설 및 환경신기술 개발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자, 건설분야 신기술 보유자 중 현장평가확인서 발급일이 현장심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를 생략한다.

구 분	확 인 사 항
기술적용시설 설치	■ 환경신기술 인·검증 또는 건설신기술 지정 - 인·검증서 또는 지정서 상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 환경신기술 인증 - 인증서 상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 특허기술 - 청구항 내 특허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기술적용시설 가동	■ 전체 공정 및 기술적용시설의 가동 여부(사진, 동영상 촬영)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 가동 현장에서 채취한 최종 생산물(순환골재 등)의 품질평가는 인증업무처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공인시험기관에 모두 의뢰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설·환경신기술 개발자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생략

- 마. 협회 회장은 기술적용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탈부착된 경우, 또는 특허공고전문, 건설신기술 지정서, 환경신기술 인·검증서 등에서 요구하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생산물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보완 요구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품질시험을 재실시한다.
- 바. 협회 회장은 신청업체가 보완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을 재신청할 수 있다.

5.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

- 가. 협회 회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과 성능이 확인된 경우 업체명, 기술의 내용 및 확인대상 시설, 시설확인 내용,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이하 “설치·가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 나. 설치·가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기술의 유효기간, 협약기간 또는 현장평가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로 하며, 설치·가동 확인 이후 설치·가동확인 업체의 당해기술 유효기간, 협약기간 또는 현장평가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치·가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Ⅲ. 사후관리

- 1. 협회 회장은 설치·가동 확인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상태를 확인점검 해야 한다.
- 2. 사후관리는 별표 2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당시의 기술과 동일한지 여부와 실제 해당기술이 정상적으로 설치·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는 생략하되, 협회 회장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3. 기술적용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탈부착된 경우 협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대상 업체에게 3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한다.

4. 협회 회장은 업체가 보완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한 경우 부적합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설치·가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부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 기술적용 시설 설치·가동확인을 재신청할 수 있다.

구 분	확 인 사 항
기술내용	■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당시의 기술과 동일한지 여부
설치·가동여부	■ 기술적용시설의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 전체 공정 및 기술적용시설의 가동여부(사진, 동영상 촬영)

IV.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협회 회장은 서류·현장심사방법 및 적정 수행여부 확인,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항목과 기준 마련, 설치·가동 확인서 적정 발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환경·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V. 현장심사인력 구성 등

1. 협회 회장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순환골재 생산기술 관련 현장심사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2. 현장심사 인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심사 시에는 외부 전문가 1인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일정상 동행이 곤란한 경우 협회에서 2명 이상 동행해야 한다.

1. 환경·건축·토목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이상 소지자
2. 환경·건축·토목분야 석사학위 또는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3. 환경·건축·토목분야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협회 회장이 인정한 자

Ⅵ.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및 취소

1.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설치·가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간처리업체는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설치·가동 확인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 포함)
2.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3. 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4. 기술사용 협약기간 연장
5. 현장평가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2. 설치·가동확인서의 취소

협회 회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가동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가동 확인을 받은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탈부착, 미가동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4. 설치·가동확인 이후 당해 기술적용시설의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VII.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

1. 협회 회장은 서류·현장심사, 외부 전문가 자문비, 사후관리 등 설치·가동 확인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폐기물 관련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를 산정하고, 신청업체에 부과한다.

2.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는 매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건설부문 기술자 임금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VIII. 재검토 기한

1.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X.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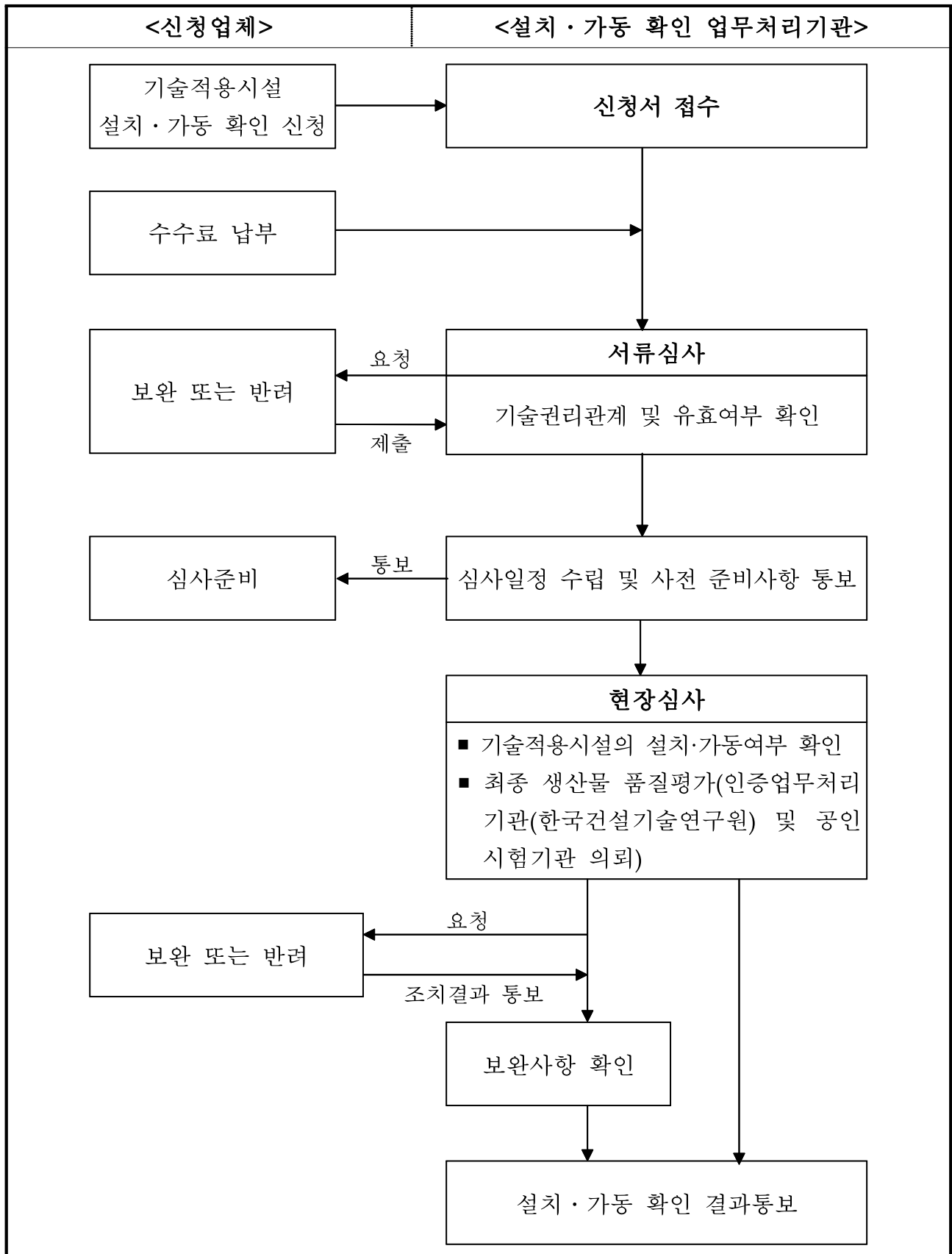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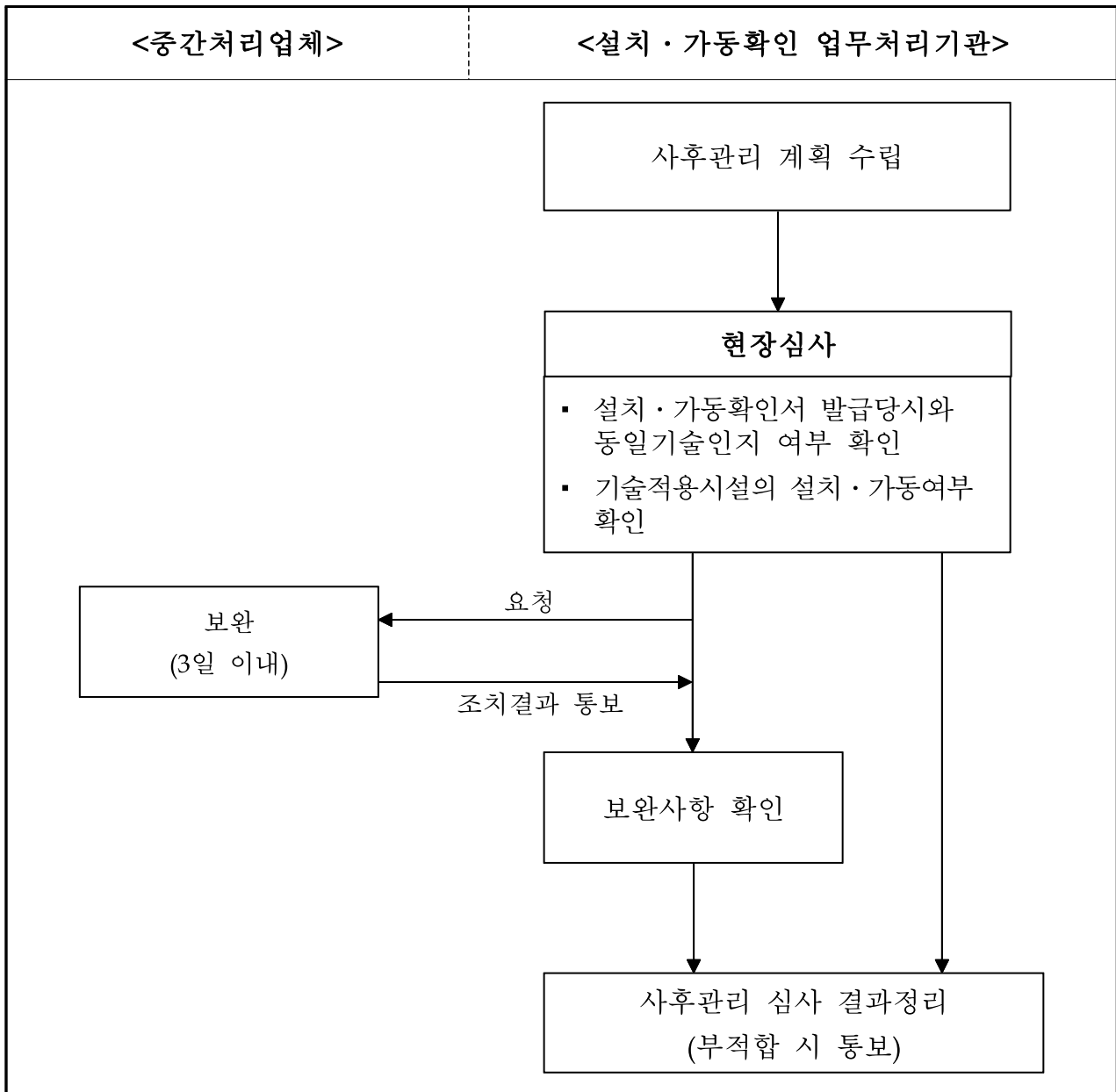
2. 경과규정

다만, 이 예규 발령(2026년 9월 1일) 이전에 설치·가동 확인을 받거나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상태 확인 점검을 받은 경우 이 예규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절차



사후관리 업무처리절차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 (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⑥ 담당자(성명)	⑦ 담당자 연락처		
기술내용 및 권리관계	⑧ 기술명칭			
	⑨ 기술분류 [] 환경신기술 인·검증 [] 환경신기술 인증 [] 건설신기술 [] 특허기술			
	⑩ 기술권리관계	⑪ 인증 등록기관		
	⑫ 등록번호	⑬ 등록일		
	⑭ 유효기간 20 ~ 20	⑮ 협약기간 20 ~ 20		

위와 같이 기술적용시설에 대한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별도부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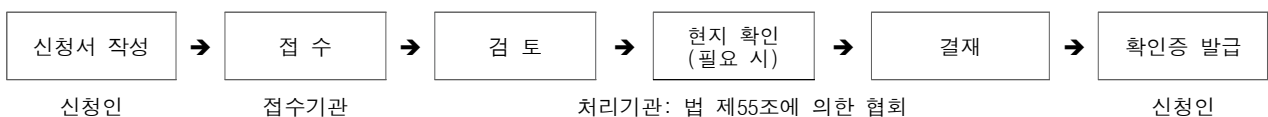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술적용시설 배치도 및 공정도 1부
4. 신청인 별 환경신기술 인·검증 서류 1부(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1) 개발자 : 인·검증서(검증당시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개발자는 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 협약자 : 인·검증서, 사용협약서, 현장평가확인서
5. 신청인 별 환경신기술 인증 서류 1부(환경신기술 인증을 받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1) 개발자 : 인증서
 - 2) 협약자 : 인증서, 사용협약서
6. 신청인 별 건설신기술 지정 서류 1부(건설신기술 지정을 받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1) 개발자 : 인증서
 - 2) 협약자 : 인증서, 사용협약서
7. 특허공고전문 및 특허등록원부 1부(특허 등록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1. ⑩기술권리관계는 기술개발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작성하며, 기술개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발자로 기입하며, 협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협약자로 기입합니다.
2. ⑪인증 등록기관은 기술적용 대상으로 신청하려는 기술 등을 인증한 기관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3. ⑫등록번호, ⑬등록일, ⑭유효기간은 신청하려는 기술의 등록번호, 등록일, 유효기간을 기입합니다.
4. ⑮협약기간은 기술의 협약관계에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앞쪽)

제0000T0000-000호

기술(신기술·특허) 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확인대상 기술의 내용

기술명칭			
기술분류	[]환경신기술 인·검증 []환경신기술 인증 []건설신기술 []특허기술		
등록번호		개발·등록권자	
인증·등록기관		기술유효기간	

기술적용 확인 대상시설

시설명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 확인내용

시설확인일시		기술권리관계	
시설확인책임자		협약기간	
확인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신기술·특허기술이 위 시설에 설치·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 20 . . . ~ 20 . . .)

년 월 일

협회의 장

직인

※ 본 확인서 발급이후, 시설의 설치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그 내용(일시, 변경사항 등)을 협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설치·가동확인서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본 확인서는 상기의 기술범위에 한하여 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사후관리점검표			
순번	점검일	점검결과	점검자
1		[]적합 []부적합	(인)
2		[]적합 []부적합	(인)
3		[]적합 []부적합	(인)
4		[]적합 []부적합	(인)
5		[]적합 []부적합	(인)
⋮		[]적합 []부적합	(인)

※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치·가동확인 업체의 장은 보완요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 발급이후, 시설의 설치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그 내용(일시, 변경사항 등)을 협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설치·가동확인서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본 확인서는 상기의 기술범위에 한하여 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